

인천지방법원 2024. 6. 5 선고 2023가단2481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티즌

담당변호사 김상하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기

담당변호사 황경학

변론 종결 2024. 5. 1.

판결 선고 2024. 6. 5.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20. 4. 7. 접수 제1020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4. 9. 3. 접수

제2339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들에 관하여 부동산지분 156평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가. 별지1, 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각각 '이 사건 제1부동산',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는 C 등과 사이에 제기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방어할 목적으로 피고와 통정하여 위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피고에게 이전한 것이므로 위 부동산에 마쳐진 피고 명의의 등기는 원인 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 또한 위 부동산의 피고 명의 등기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도 위반되므로 무효이다.

나.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C으로부터 위 부동산 중 333평 부분만을 매수하였는데, 위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진행 과정 도중 서류상 잘못으로 이 사건 제3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원고가 이를 지적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서 333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해주기로 증여약정을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156평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D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합의금 187,000,000원을 원고를 대신하여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금액 상당의 구상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대물변제 약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들은 어떠한 민·형사상의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는 부제소합의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부분은 위 부제소합의에 위배되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부제소항변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위반하여 제기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21760 판결 등 참조).

한편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과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에서의 부제소합의라도 그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원고, 피고, C, D, E은 2020. 4.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제1합의'라고 한다)를 하고, 합의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1.(D와 A 사이에서) D는 서울고등법원 2016나203367호 판결에 따른 채권을 포기하고, 인천지방법원 F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취하하고, 대전지방법원 2014카단5019 부동산가압류를 취하하고, 인천지방법원 2018타채1929호(채무자 A)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도 취하한다. A은 그 대가로 D에게 금 187,000,000원을 지급한다.

3. (C과 B 사이에서) C은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60523호(피고 B) 소를 취하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C은 인천 강화군 G 도로 20㎡의 소유권을 매매를 원인으로 B에게 이전하고, B은 그 매매대금으로 C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한다.

4. (E과 B 사이에서) E은 인천 강화군 H 답 284㎡외 5필지 소유권을 각 매매를 원인으로 B에게 이전하고, B은 위 6필지의 매매대금으로 금 32,000,000원을 E에게 지급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합의서 제1항에 따른 합의금 187,000,000원을 D에게 자신을 대신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는 2020. 4. 7. D, C, E으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I 법무사에게 이 사건 제1합의 제1항에 따른 187,000,000원, 제3항에 따른 1,000,000원, 제4항에 따른 32,000,000원 합계 22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20. 4.경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제1합의'라고

한다)하고, 합의서[을 제4호증, 원고는 위 합의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인정 부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8215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합의서의 위조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작성하였다.

합의서

부동산의 표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J 외 3필지 토지, 건물

위 부동산소유자 A은 2020. 4. 7.자에 B이 소외 D에게 지급한 합의금 187,000,000원 및 채권자 B과 채무자 A 간 인천지방법원 2018차전257 대여금 지급명령결정정본 금 200,000,000원 합계 금 387,000,000원 채무금은 소유자 A이 B에게 등기권리증, 매매용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매매계약서(매매대금은 현시세로 작성한다), 등기위임장, 인감도장 날인, 부동산실거래신고서 날인 등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B에게 교부하여 주면, B은 채무자 A에 대한 모든 채권채무관계가 변제된 것으로 보고 더 이상 A에게 어떠한 금원을 청구할 수 없다. 위 합의에 대하여 당사자들은 어떠한 민·형사상의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하여 2020. 4. 7.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자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을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이 사건 제2합의를 하며 위 대물변제 합의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고 약정하였는바, 이는 특정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므로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제소합의에 위배되므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 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이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등기가 원인 무효인 사실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이 사건 제3부동산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제3부동산 중 156평에 대한 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하여 주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김지희

별지